

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1	2001년도 행정 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	□ 제안이유 ·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도 예산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, ·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고 2002년도 예산편성안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므로써, · 의회의 시정 감시기능이 시민의 복지향상에 부응되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□ 주요내용 ○ 기 간 : 3일 ○ 장 소 : 각 상임위원회실 ○ 현황설명 -본 청 : 국장 및 과장·담당관 -사업소 : 소장 및 과장 -구 : 구청장 및 과장		본회의

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2	성남시인터넷 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 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 ·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. □ 주요골자 ·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(안 제3조~안 제7조) 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(안 제8조) 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(안 제12조~안 제7조) · 전자우편 ID 보급(안 제14조~안 제15조) ·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(안 제16조) ·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(안 제17조)	정보통신과	행정경제

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
3	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운영12100-800(2001.9.26)호로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기(60일→90일)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른 부분개정임. □ 주요골자 ·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(안 제23조제2항)	총 무 과 행정경제
4	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사회 각분야에 대한 지식·정보의 제공 및 사회교육을 위해 건립한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전담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시에 두는 사업소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□ 주요골자 · 사업소(안 제2조) - 신설 : 중앙문화정보센터 - 폐지 : 수정문화정보센터, 분당문화정보센터 · 소관사무(안 제19조) - 정보센터운영 종합기획 및 조정 - 자료의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 및 관리 - 지역문화·사회교육에 관한 정보개발 및 제공 - 정보센터 민간위탁 및 위탁체 지도감독 - 여성문화회관 운영관리	총 무 과 “

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5	성남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사회 각분야에 대한 지식·정보의 제공 및 사회교육을 위해 건립한 중앙문화정보센터 신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. □ 주요골자 ·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(안 제2조) - 총 정 원 : 2,158명 → 2,165명(증 7명) - 집행기관 : 2,131명 → 2,138명(증 7명) - 의회사무국 : 27명(변동없음)	총 무 과	행정경제
6	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비상임이사 정수의 50% 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토록 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비상임이사중 업무관련 공무원등 당연직 이사는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지방공기업 경영관련 민간전문가등 사외 이사 참여를 확대 하여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경영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. □ 주요골자 ·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업무관련 공무원을 종전 4인에서 2인으로 제한하고 공인회계사, 교수, 변호사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사외 비상임이사 참여를 확대함 (안 제9조제4항) · 사외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함(안 제9조제5항)	기획예산과	행정경제

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7	성남시구의료 보험운영지원율 위 한 조 례 폐 지 조례안	☐ 제안이유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(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)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9조(보험자)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0월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설립되므로써 동조례 존치이유 상실됨 ☐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	사회복지과	사회복지
8	성남제2종합 운동장운영·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	☐ 제안이유 · 2001. 11. 13 준공예정인 있는 성남 제2종합 운동장을 민간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가. 위탁의 필요성 · 작은 정부의 구현 및 지방재정력 강화와 더불어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기능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·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	문화체육과	사회복지

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		나. 협약서 요약 · 위 · 수탁사무 - 시설명 : 성남제2종합운동장 - 위 치 : 분당구 야탑동 486번지 일원 - 규 모 - 부 지 면 적 : 117,141.58㎡ (35,435.33평) - 건축연면적 : 91,720.57㎡ (27,745.47평) · 위탁범위 : 체육시설물 및 재산등의 관리운영 (협약서안 제2조) · 계약기간 : 2년으로 하며, 2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(협약서안 제3조) · 사용료의 징수등 (협약서안 제4조) · 비용부담 (협약서안 제7조) · 관리위탁의 해지(협약서안 제12조)		
9	성남시소하천 점용료및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우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이 타시군이나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보다 높게 규정되어 타시군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점용료 산정요율을 하향 조정 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기준이 경기도하천 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점용료 산정 기준이나 타시군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과 비교시 2배로 타시군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하향조정함 (별표1) · 유주수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 기준이 없어 신설함 (별표1)	재난재해관리과	도시건설

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10	성남시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· 정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지방공기업경영 개선 방침에 따른 하수도 요금을 톤당 평균 20%인상(안)을 성남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· '97년 12월 30일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 (환경부 훈령 제380호)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업종 통폐합 및 누진체계를 개편 하여 하수도공기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에 부응하고 하수도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하여 톤당 평균 20% 인상하고, · 주민이 배출하는 하수의 양 만큼 요금을 부담토록하여 물 절약시책에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본요금제 폐지, 업종별 구간누진제 실시 (안11조 별표1) ·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른 업종 통폐합 (안11조 별표1-1)	하수처리과	도시건설

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
11	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및공급 업무민간위탁 동의안	□ 제안이유 ○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판매·공급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한 관리인력 부족과 봉투판매인들의 봉투구입에 많은 불편이 있어 ○종량제봉투 판매·공급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동사무소 인력부족으로 인한 현금사고 예방 및 봉투판매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○위탁범위 : 쓰레기종량제봉투, 불연성규격마대, 대형폐기물스티카를 지정판매소까지 판매·공급업무 및 관계된 장비·시설물 관리업무 일체 ○위탁기간 : 3년 ○운영·관리비 지원 :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금액 ○책임의 한계 : 수탁관련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짐 ○계약의 해지 ·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조례 개폐의 경우 ·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정지하였을때	청 소 과 사회복지